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1
----------	-----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의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으로 인용조문 수정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합치하도록 조례 제2조의 내용 중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09. 23. ~ 2015. 10. 13.)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를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4”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4”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으로,
“주민의”를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3조4</u>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u>지방자치법 제13조4</u>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u>주민의</u>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16조제1항----- ----- ----- -----.</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u>지방자치법</u>」 제16조제1항----- ----- -----<u>19세 이상의 주민</u>-----.</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 성 자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연 락 처	(033)330-2206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 ⑨ 생략